

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71295(본소), 2022나71318(반소) 판결

[배당이의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흥, 담당변호사 양효중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6. 15.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0가단576337(본소), 2021가단 554143(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443,178원을 61,662,356원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5,780,822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반소

원고와 B 사이에 2018. 3. 2. 체결된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체결하였고,”를 “체결하였고, D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B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50,000,000원, 보증채무 기간을 2021. 3. 2.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연대보증하면서 이를”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중소기업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다.”를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합계 144,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F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다.”로 고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4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을 “다. 채권자취소권의 발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B의 채무초과 여부

가) 이 법원의 L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와 가까운 2018. 3. 2.을 기준시점으로 한 시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25,72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B 지분(16.5/238) 1,881,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44,000,000원, 별도 주택 18,859,500원 합계 290,460,5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보증으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보증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B이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도 주택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물상담보로 제공한 채권최고액 합계 144,000,000원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에게 물상담보로 제공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중 2018. 6. 14.까지 실제
발생한 피담보채무액 56,780,820원¹⁾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8. 6. 14. B의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사전구상권 기준) 59,500,000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50,000,000원,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335,917원 합계 114,835,91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4,370,740원과 주식회사 M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0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무액의 연체발생일은 2018. 7. 6.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B이 주식회사 M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B의 적극재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89,679,680원(= 290,460,500원 - 144,000,000원 - 56,780,820원)이고, B의 소극재산은 적어도 114,835,917원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 점”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 점(피고의 보증기한 연장 후 D은 B의 연대보증 아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8. 6. 15. 64,000,000원, 2018. 8. 30. 100,000,000원의 추가대출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였다)”로 고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진다. B은 원고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제1, 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D의 대출채무를 신용보증하였고, B은 D이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 사전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2018. 3. 2. 당시 이미 피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3. 7.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니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점, ③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3. 20.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 59,500,000원을 기초로 제1, 2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일 당시 이미 피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B의 채무초과 여부

(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인 2018. 3. 2.을 기준으로 한 B의 적극재산이 합계 290,460,5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여기에서 B이 중소기업은행에 물상담보로 제공한 채권최고액 합계 144,000,000원과 F에게 물상담보로 제공한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중 2018. 3. 2.까지 발생한 피담보채무액 53,219,170원²⁾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인 2018. 3. 2.을 기준으로 한 B의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사전구상권 기준) 59,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B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 부가가치세 체납액 34,606,850원(2018. 7. 귀속분)을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3) 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일인 2018. 3. 2.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B의 적극재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93,241,330원(= 290,460,500원 - 144,000,000원 - 53,219,170원)이고, B의 소극재산은 59,5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3)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B의 순재산은 합계 33,741,330원(= 93,241,330원 - 59,500,000원)인 점, ② D은 2018. 3. 2. 이전에 원고에게 30,000,000원 이상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는데, 20,000,000원 상당의 추가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B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인 2018. 3. 31. 5,830,000원, 2018. 4. 30. 7,865,000원, 2018. 5. 31. 5,720,000원 합계 19,4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B 입장에서 D이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하게 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영훈, 판사 오연수, 판사 김태홍

목 록

1. 화성시 I 대 660㎡
2. 화성시 J 전 238㎡
3. 화성시 I K동호 연와조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층 100㎡. 끝.

1)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6. 14.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00원 × 25% × 198/365, 10원 미만 버림) (을 제19호증의 10)

2)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3. 2.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0,000원 × 25% × 94/365, 10원 미만 버림) (을 제19호증의 10)

3)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